

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8월 23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6일

3. 제안이유

-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를 ‘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사업’에서 ‘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’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(안 제9조제1항제2호)
-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근거 법령인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개정 및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 등에 따라 산업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

-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무 또한 강화되고 있는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기업 및 관계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함

나. 주요내용

- ‘도내 모든 사업장’에 대해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활동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(안 제9조)

‘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사업’ → ‘도내 모든 사업장’

-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조항 신설 (안 제10조)

제10조(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다. 종합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계획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, 근거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

- 다만,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선정 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또한, 2024년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계획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 및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킴이단 활동 확대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이 필요함